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2184호
2025년 12월 10일
수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공 고 제 2 2 2 5 호	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수현지구 소로2-1호선 도로개설공사	도 로 과	2
○ 공 고 제 2 2 6 3 호	도시계획시설(주차장: 구월동 1261-12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영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·열람	도 시 재 생 과	5
○ 공 고 제 2 2 7 3 호	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	기 획 예 산 과	8
○ 공 고 제 2 2 7 4 호	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	기 획 예 산 과	16
○ 공 고 제 2 2 7 5 호	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	기 획 예 산 과	25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2225호

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수현지구 소로2-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5. 10. 24.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2025. 12. 10.

남 동 구 청 장

1. 사 업 명: 수현지구 소로2-1호선 도로개설공사
2. 사 업 위 치: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55-9번지 일원
3. 사업 시행자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4.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: 남동구청 도로과 방문 또는 전화(☎032-453-2714)
5. 공시송달 대상 : 불임참조
6. 공시송달 사유 : 주소불명 등
7. 공시송달 공고기간 : 2025. 12. 10. ~ 12. 24.(15일간)
8. 기타

가.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나.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「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」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

「붙임」

공시송달 대상자

연번	성 명	송달주소	비고
1	민*기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 8*-179(선유동)	
2	오*섭	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8*	
3	차*철	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9*5	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2263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: 구월동 1261-12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영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·열람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: 구월동 1261-12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영주차장)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교통행정과(☎453-2682), 도시재생과(☎453-2954)에 갖추어 놓았으며,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12. 10.

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1-12번지 일원, 1259-18번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
- 명칭: 구월동 1261-12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영주차장

3. 사업규모

- 구월동 1261-12번지 일원: A=931.7㎡(주차대수: 29면)
- 구월동 1259-18번지: A=453.0㎡(주차대수: 14면)
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남동구청장(교통행정과)
-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

5.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~ 2027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- 따로 붙임

7.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: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
8. 열람 장소

- 남동구청(교통행정과 032-453-2682, 도시재생과 032-453-2954)

9. 관계 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편 입 용 지 조 서

일련 번호	동	지 번	지 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	
			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비 고
1	구월동	1261-13	대	193.0	193.0	김*규	인천시 구월동 ****_**			
2	구월동	1261-12	대	161.1	161.1	문*식	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***			
3	구월동	1261-10	대	207.2	207.2	김*규	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***번길 **_*			
4	구월동	1261-9	대	163.6	163.6	이*철	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***_** **아파트 ***동 ***호			
5	구월동	1261-3	대	158.0	158.0	이*래	인천 서구 석남동 ***_** **빌라 *_***			
6	구월동	1261-4	도	99.2	48.8	인천광역시	-			
7	구월동	1259-18	대	453.0	453.0	이*연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** ****동 ****호			
소 계				1,435.1	1,384.7					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2273호

「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. 12. 9.

남 동 구 청 장

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부서별 업무와 기능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11조, 제12조, 제14조)
- 본청에 두는 실·과의 분장사무 정비(별표 1)

구 분	부서명	분장사무	개정사유
신 설	미래전략과	13. 남동 물빛놀이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14. 국가도시공원 지정 협의에 관한 사무	사무추가
신 설	생활경제과	10.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	사무이관 (일부)
개 정	기업지원과	26.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	
신 설	복지정책과	20. 의료·요양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사무	사무추가
신 설	자동차관리과	25.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	사무이관
삭 제	환경보전과	24. 아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	
개 정	치수과	19. 지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무 →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	특별회계 폐지

3 입법예고기간 : 2025. 12. 9. ~ 12. 11.(2일간)

-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
 - 단축사유 :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(우 21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민수동)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/ ☎ 43-202, FAX 43-209)

- 남동구 홈페이지(<https://www.namdong.go.kr/main/news/legislation.jsp>)

5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2월 일
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부서별 업무와 기능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11조, 제12조, 제14조)
○ 본청에 두는 실·과의 분장사무 정비(별표 1)

구 분	부서명	분장사무	개정사유
신 설	미래전략과	13. 남동 물빛놀이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	사무추가
		14. 국가도시공원 지정 협의에 관한 사무	
신 설	생활경제과	10.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	사무이관 (일부)
개 정	기업지원과	26.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	
신 설	복지정책과	20. 의료·요양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사무	사무추가
신 설	자동차관리과	25.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	사무이관
삭 제	환경보전과	24.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	
개 정	치수과	19. 지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무 →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	특별회계 폐지

☐ 본 문 : “별첨”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☐ 참고자료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남동구 규칙 제 호

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기술서기관”을 “지방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지방기술서기관”을 “지방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지방기술서기관”을 “지방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환경교통국) 환경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<u>지방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하고, 청소행정과장은 환경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,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,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	제11조(환경교통국) ----- ----- <u>지방과학기술서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2조(도시국) 도시국장은 <u>지방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하고, 도시재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,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	제12조(도시국) ----- <u>지방과학기술서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4조(보건소) 보건소장은 <u>지방</u>	제14조(보건소) ----- <u>지방과</u>

<u>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하고,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,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지방보건사무관,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,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, 지방보건사무관,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,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.	<u>학기술서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[참고자료]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2274호

「남동구 사무위임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. 12. 9.

남 동 구 청 장

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남동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-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정비(별표 1)

구 분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비고
삭 제	3. 의약품판매업(한약종상, 약종상, 매약상)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나.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.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라.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	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2조 「약사법」 제35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	
신 설	8.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위임 및 위탁 나. 검진기관의 지정 다.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라. 청문	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	

3 입법예고기간 : 2025. 12. 9. ~ 12. 11.(2일간)

-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
 - 단축사유 :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(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/ ☎ 43-2082, FAX 43-2089)

- 남동구 홈페이지(<https://www.namdong.go.kr/main/news/legislation.jsp>)

5. 참고사항
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2월 일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남동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정비(별표 1)

구 분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비고
삭 제	3. 의약품판매업(한약종상, 약종상, 매약상)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나.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.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라.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	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2조 「약사법」 제35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	
신 설	8.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위임 및 위탁 나. 검진기관의 지정 다.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라. 청문	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	

☐ 본 문 : “별첨”

☐ 참고자료
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남동구 규칙 제 호

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(제2조 관련)

위 임 자 (소관부서)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수임자
구청장	1. 의약품판매에 관한 사항 가. 의약품도매상 허가 나.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다. 도매상의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	「약사법」 제35조제2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84조제1항	보건소장
	2. 의료기관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부속병원)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.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나.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 다.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명령 라.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마. 보고와 업무감사 바.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사.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	「의료법」 제3조 「의료법」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63조의2	
	3. 마약류 도·소매업자, 의료업자,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.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.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다.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. 마약류취급자의 폐업·휴업·재개업신고 마. 마약류취급자의 사망,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.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(마약류 도매업제외) 사. 사고마약류의 처리 아.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.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	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, 제5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	

위 임 자 (소관부서)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수임자
	차. 마약의 도매보고 카. 마약의 소매보고 타.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. 허가 등의 제한 하.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. 출입·검사와 수거 너. 폐기 명령 등 더. 업무보고 등 러.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머. 청문 버. 과징금처분	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	
	4.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감염자의 진료 등 보호 관리	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」 제22조	
	5.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. 모자보건사업 지도 나. 모자보건, 가족계획요원 교육	「모자보건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	
	6. 의료장비관리	「물품관리법」 제35조	
	7.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산후조리업 신고 및 사항 변경 나.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. 보고·출입·검사 등 라. 시정명령 마.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바. 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사. 과징금	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	

위 임 자 (소관부서)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수임자
	아. 청문	같은 법 제15조의13	
	8.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위임 및 위탁 나. 검진기관의 지정 다.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라. 청문	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	

[참고자료]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4조(재위임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(교육장을 포함한다) 또는 읍·면·동장,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2275호

「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. 12. 9.

남 동 구 청 장

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- [별표1]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개정

부서명	구 분	개정사무	비 고
일자리정책과	전결권 하향	16.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	'마' 개정 (구청장→부구청장)
기업지원과	명칭변경	26.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무	'라~마' 개정
세무1과	신설	14. 개별주택에 관한 사무	'자' 신설
생활경제과	신설	6.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	
여성가족과	명칭변경	4.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	'나~라' 개정
	삭제	11. 남동구 세계주간·다문화가정의날 행사운영	
	신설	11.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 및 사업 운영	'가, 다, 마' 신설
정보통신과	신설	49.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업무	
복지정책과	신설	21. 의료·요양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사무	
노인정책과	신설	6. 장기요양기관 설치(지정) 및 관리에 관한 사무	'아~카' 신설
장애인지원과	명칭변경	2.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	'가~마' 개정, '사~아' 삭제

환경보전과	삭제	58.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	
자동차관리과	신설	25.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	
치수과	전결권 하향	3. 빗물배수펌프장 근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	'나' 개정 (과장→팀장)
	명칭변경	7. 지하수 세외수입	
	명칭변경 및 전결권 상향	17. 지방하천 유지관리	'가~나' 개정 (팀장→과장)
도시디자인과	명칭변경	3.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해제	
	명칭변경 및 전결권 상향	4. 안전도검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	'가' 개정 (부구청장→구청장)
	전결권 하향	5. 위반 옥외(고정)광고물 정비	'다~라' 개정 (국장→과장)
	기안자 하향	7.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	'가' 개정 (팀장→담당자)
	신설 및 명칭변경	12. 공공게시시설 위탁에 관한 업무	단위사무명 개정, '나, 라' 개정
	명칭변경	17.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	단위사무명 개정, '나' 개정

○ [별표2]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개정

부서명	구 분	단위사무명	비 고
치매정신건강과	신설	7.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홍보사업	'마' 신설
	신설	8. 치매안심마을 운영	'나' 신설
	신설	15. 정신건강증진사업	'차~카' 신설
	전결권 하향	16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	'가' 개정 (보건소장→과장)
	전결권 하향	17.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	'가' 개정 (보건소장→과장)
	전결권 하향	18.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	'가' 개정 (보건소장→과장)
	삭제	19.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	

3 입법예고기간 : 2025. 12. 9. ~ 12. 11.(2일간)

-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
- 단축사유 :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서면

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(우 21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, (만수동)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/ ☎ 43-202, FAX 43-209)

- 남동구 홈페이지(<https://www.namdong.go.kr/main/news/legislation.jsp>)

5. 참고사항

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10조

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2월 일
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□ 제안이유

-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[별표 1]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개정

부서명	구 분	개정사무	비 고
일자리정책과	전결권 하향	16.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	'마' 개정 (구청장→부구청장)
기업지원과	명칭변경	26.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무	'라~마' 개정
세무1과	신설	14. 개별주택에 관한 사무	'자' 신설
생활경제과	신설	6.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	
여성가족과	명칭변경	4.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	'나~라' 개정
	삭제	11. 남동구 세계주간·다문화가정의날 행사운영	
	신설	11.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 및 사업 운영	'가, 다, 마' 신설
정보통신과	신설	49.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 업무	
복지정책과	신설	21. 의료·요양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사무	
노인정책과	신설	6. 장기요양기관 설치(지정) 및 관리에 관한 사무	'아~카' 신설
장애인지원과	명칭변경	2.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	'가~마' 개정, '사~아' 삭제
환경보전과	삭제	58.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	
자동차관리과	신설	25.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	
치수과	전결권 하향	3. 빗물배수펌프장 근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	'나' 개정 (과장→팀장)
	명칭변경	7. 지하수 세외수입	
	명칭변경 및 전결권 상향	17. 지방하천 유지관리	'가~나' 개정 (팀장→과장)
도시디자인과	명칭변경	3.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해제	

명칭변경 및 전결권 상향	4. 안전도검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	'가' 개정 (부구청장→구청장)
전결권 하향	5. 위반 옥외(고정)광고물 정비	'다~라' 개정 (국장→과장)
기안자 하향	7.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	'가' 개정 (팀장→담당자)
신설 및 명칭변경	12. 공공게시시설 위탁에 관한 업무	단위사무명 개정, '나, 라' 개정
명칭변경	17.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	단위사무명 개정, '나' 개정

○ [별표 2]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개정

부서명	구 분	단위사무명	비 고
치매정신 건강과	신설	7.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 홍보사업	'마' 신설
	신설	8. 치매안심마을 운영	'나' 신설
	신설	15. 정신건강증진사업	'차~카' 신설
	전결권 하향	16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	'가' 개정 (보건소장→과장)
	전결권 하향	17.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	'가' 개정 (보건소장→과장)
	전결권 하향	18.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	'가' 개정 (보건소장→과장)
	삭제	19.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	

□ 본 문 : “별첨”

□ 참고자료

○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10조

남동구 규칙 제 호

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참고자료]

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

제10조(문서의 결재)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, 출장,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